

2021년 소득기준표 및 영양위험요인 세부사항

1. 대상자격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 수 ¹⁾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2.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빈혈 판정기준 : WHO 기준)
 - 6~59개월 영유아: 11g/dl 미만 - 5세 유아: 11.5g/dl 미만
 - 임신부: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12g/dl 미만
- ※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모체의 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음

○ 신체계측

■ 영유아

저체중이나 성장부진

-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 연령별 신장,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표준체중에 대한 비율이 80% 미만

- 임신·출산·수유부: 저체중(BMI 18.5미만)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판정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RIs, 2015)에 근거하여 판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다태아(쌍생아 이상)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등